

1. 개정 이유

선박소유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검사도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의 여러 검사와 더불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기록의무가 외국선박에도 부여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록언어를 ‘한글’에서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하는 한편, 2019년 7월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형식승인에 합격했을 경우에 발급할 수 있는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임 조항 명확화(안 제15조 개정)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한 법률의 위임근거를 항까지 명확하게 표현

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작성 언어(안 제20조제3항 개정)

- 1)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작성 의무는 한국선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도 적용됨
- 2) 현행 규정은 ‘한글에 영어를 함께 적거나 영어로만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선장 및 직원이 한국인이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만 기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3)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영어를 함께 적거나 영어로만 기록’하도록 개정하여, 한글 및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국 언어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다. 전자증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 1)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항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박관련 검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에서는 현행 종이로만 발급해오던 검사증서를 전자적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20.1월)하고 있음
- 2)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항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증서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대항기관에서 다른 검사증서와 함께 일관성 있게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 3)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을 통해 선박소유자가 증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항기관의 검사신청 통합서식 사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 1)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항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이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박관련 검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에서는 대항기관이 여러 종류의 검사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게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20.1월)하고 있음

- 2) 선박관련 여러 종류의 검사는 대항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준용하여 대항기관에서 다른 검사신청서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대항기관의 통합서식 사용 근거 마련 필요
- 3) 대항기관이 검사신청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선박소유자가 서식 한 장만 작성하여 선박관련 여러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서식 추가(안 제30조 개정)

- 1) 현행('19.7.1 개정 시행)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는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MEPC.279(70)에 따른 형식승인에 합격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음
- 2) 이에, 이전 규정인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MEPC.174(58)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에 합격했던 증서를 갱신 또는 변경승인 하거나 이전 기준으로 형식승인에 합격한 경우에는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근거 마련 및 서식 반영 필요
- 3) '19.7.1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사용해왔던 MEPC.174(58)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민원 처리의 적법성 확보 필요

바. 약칭 사용의 일관성 유지(안 제48조, 안 제49조 개정)

현행 제16조의3제1항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약칭을 ‘대항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관되게 약칭 사용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글”을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를 준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의3(검사신청 서식) 선박소유자가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를 대항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을 준용하여 대항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MEPC.174(58)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대행기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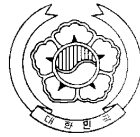
제49조 본문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대행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한글”을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하고, 같은 서식 중 “Korean”을 “the working language of the master and officers”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는 국제해사기구(IMO) 결의서 MEPC.174(58)에 포함된 지침서의 상세요건에 따라서 아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검사/시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이 증서는 아래에 기재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listed below has been examined and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specifications contained in the Guidelines contained in IMO resolution MEPC 174(58).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for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referred to below.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공급자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supplied by _____

형식 및 모델명

Under type and model designation _____

and incorporating: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manufactured by _____

장비 및 조립도면번호

to equipment/assembly drawing No. _____ date _____ 날짜

기타 장비의 제조자

Other equipment manufactured by _____

장비 및 조립도면번호

to equipment/assembly drawing No. _____ date _____ 날짜

정격처리용량

Treatment Rated Capacity _____ m³/h

이 형식승인증서의 사본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선박에 항상 비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형식승인시험계획서와 형식승인시험결과보고서 사본은 선박검사 시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일, 형식승인증서가 타 주관청의 승인에 기초해서 발행되었다면 그 형식승인증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A copy of this Type Approval Certificate, should be carried on board a vessel fitted with thi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at all times. A reference to the test protocol and a copy of the test results should be available for inspection on board the vessel. If the Type Approval Certificate is issued based on approval by another Administration, reference to that Type Approval Certificate shall be made.

승인제한 조건은 이 증서의 추록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Limiting Conditions imposed are described in the appendix to this document.

Official stamp

서명

Signed. _____

주관청

Administration of. _____

날짜

Dated this day of. _____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 추록

SUPPLEMENT TO THE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승 인 번 호

Certificate No. _____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시험결과와 육상·선상시험의 세부사항은 국제해사기구(IMO) 결의서 MEPC.174(58)에 따라서 수행된 것입니다.

Test results and details of land and shipboard tests conducted on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in accordance with IMO Resolution MEPC.174(58).

1.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Type: _____

정격처리용량

Treatment rated capacity: _____ m³/h

제조사

Manufactured by _____

2. 처리물질의 종류

The Active Substance _____

2.1 처리물질의 최대 사용량(또는 UV 방식의 경우 최대 조사량)

Maximum dosage of the Active Substance*/Maximum radiation dosage*: _____

2.2 처리물질의 최저 사용량(또는 UV 방식의 경우 최저 조사량)

Minimum dosage of the Active Substance*/Minimum radiation dosage*: _____

3. 중화제의 종류

Substance for Neutralization of the Active Substance _____

4. 배출시 최대 TR0 농도(또는 UV 방식의 경우 배출시 조사량 허용범위)

Maximum Allowable Discharge Concentration of TR0*/Permitted range of radiation dosage* at discharge: _____

4.1 그 밖의 사용물질(해당시만)

Substances for any other use _____

5. 유입해수의 허용 온도 및 염도 범위

Permitted rang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f seawater inlet _____ / _____

6. 육상시험 결과 요약

Summary of the land based test results

6.1 시험이 수행된 형식승인시험기관

Organization conducting the test _____

6.2 시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용량

Treatment rated capacity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tested: _____ m³/h

6.3 시험시 온도 및 염도 범위

Rang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f test water _____ / _____

6.4 시험결과 요약

Summary of the land based test results

6.4.1 고염도 조건

Condition of High Salinity: (_____ PSU)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 조건 Uptake Condition			미처리수 배출 Discharge Controlled			처리수 배출 Discharge Treated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µm 이상인 생물 Organisms ≥ 50 µm (individuals/m ³)									
10 µm 이상 50 µm 미만인 미생물 Organisms ≥ 10 < 50 µm (individuals/mL)									
박테리아 Heteromorphic bacteria (cells/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cfu/100mL)									
미생물 Enterococci (cfu/mL)									
장구균 Vibrio cholera (cfu/mL)									

6.4.2 저염도 조건

Condition of Low Salinity : (PSU)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 조건 Uptake Condition			미처리수 배출 Discharge Controlled			처리수 배출 Discharge Treated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μm 이상인 생물 Organisms $\geq 50 \mu\text{m}$ (individuals/ m^3)									
10 μm 이상 50 μm 미만인 미생물 Organisms $\geq 10 < 50 \mu\text{m}$ (individuals/mL)									
박테리아 Heteromorphic bacteria (cells/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cfu/100mL)									
미생물 Enterococci (cfu/mL)									
장구균 Vibrio cholera (cfu/mL)									

7. 선상시험 결과 요약

Summary of the ship-based test results

7.1 시험이 수행된 형식승인시험기관

Organization conducting the test : _____

7.2 시험장소

Place of test : _____

7.3 시험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용량

Treatment rated capacity of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tested : _____ m^3/h

7.4 시험시 온도 및 염도 범위

Range of temperature and salinity of test water _____ / _____

7.5 시험결과 요약

Summary of the Ship based test results

시험결과 Test results	주입 조건 Uptake Condition			미처리수 배출 Discharge Controlled			처리수 배출 Discharge Treated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50 μm 이상인 생물 Organisms $\geq 50 \mu\text{m}$ (individuals/ m^3)									
10 μm 이상 50 μm 미만인 미생물 Organisms $\geq 10 < 50 \mu\text{m}$ (individuals/mL)									
박테리아 Heteromorphic bacteria (cells/mL)									
대장균 Escherichia coli (cfu/100mL)									
미생물 Enterococci (cfu/mL)									
장구균 Vibrio cholera (cfu/mL)									

7.6 물리화학 및 수질 조건

Physical and water quality conditions

변수 (Parameter)	주입 조건 Uptake Condition			미처리수 배출 Discharge Controlled			처리수 배출 Discharge Treated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평균 Mean	최대 Max.	최소 Min.
염도 Salinity (psu)									
온도 Water temp. ($^{\circ}\text{C}$)									
총부유물질량 Total Suspended Solids (TSS) (mg/L)									
입자성 유기탄소량 Particulate Organic Carbon (POC) (mg/L)									

8. 승인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구성품 목록
Components list of BWMS approved

9. 장비 및 조립 도면번호

Equipment/assembly drawing number of _____

9.1 제조자의 장비 및 조립 도면 번호

Equipment/assembly drawing number of _____

9.2 그 밖의 장비 및 조립 도면번호

Equipment/assembly drawing number of _____

10. 비고
Remark

Official stamp

서명

Signed. _____

주관청

Administration of. _____

날짜

Dated this day of. _____

제 호			
No.			
수리 · 보완명령서 Notice of Repair/Supplementation			
① 선박명 Name of Ship /상호명 Company		② 선장 성명 Name of Master /대표자 Representative	
③ 선박번호 Official Number /사업자등록번호 Registration No.		④ 대리점 Agent /전화번호 Phone Number	
⑤ 선적항 Port of Registry /회사 주소 Address			
⑥ 수리 · 보완 사유 Reason for Repair /Sup plementation			
⑦ 기간 및 해제 조건 Period & Condition of release			
⑧ 비고 Remarks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 · 보완명령서를 발급합니다. This Notice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 of Enforcement Decree for the Ship's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서명 또는 인) Minister of Ocean and Fisheries Administrator of the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u>법 제8조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u>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u>법 제8조제1항</u> ----- ----- -----.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② (생략)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기록하여야 하며, <u>한글에 영어를 함께 적거나 영어로만 기록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u>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u> -----.
<u><신 설></u>	<u>제24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를 준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4조의3(검사신청 서식) 선박소</u>

유자가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를 대행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3을 준용하여 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
항에서 “해양수산물령으로 정
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
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30조(형식승인서) -----

----- . 다만, 국
제해사기구 결의서 MEPC.174
(58)의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
험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
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
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

----- 대행기
관-----

한다.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제49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u>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u> 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항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협정기간의 연장) ----- ----- ----- <u>대항기관</u> ----- ----- ----- ----- ----- ----- ----- ----- ----- -----.